

「가축전염병 방역요령」 개정안

「위험·경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

구 제역의 방역강화를 위해 현행 보호지역과 경계지역이 위험·경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고 살처분이 발생농장 중심에서 구제역 발생마을 전체로 확대되는 등 방역규정이 개정, 시행된다.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4월 경기도 파주 등 6개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경험을 토대로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을 국내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방역규정의 주요 내용은 가축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보호지역(발생농장 반경 10km)과 경계지역(반경 10~20km)을 위험지역(반경 3km), 경계지역(3~10km), 관리지역(10~20km)으로 세분화하고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외국과 같이 가축의 이동제한을 하지 않고 혈청검사와 소독·질병예찰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들 3개 지역의 구체적인 방역내용으로는 위험지역의 경우 원유·도축부산물 폐기, 정육유통, 예방접종, 위험지역 밖으로의 가축반입 금지 규정을 추가하고 방역조치기간을 예방접종 완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상·혈청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날 때까지로 규정했다.

또 경계지역은 도축부산물 폐기, 정육유통, 인공수정 제한, 경계지역 밖으로의 가축반입 금지 규정을 추가하고 살처분 완료 후 3주가 경과하고 임상·혈청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날 때까지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리지역은 가축시장 폐쇄, 소독·예찰활동 및 도축·

혈청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살처분은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것을 구제역 전과위험도를 감안하여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맞게 구제역이 발생한 마을 전체의 가축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농장주변의 지리적 또는 역학적 특성을 감안하여 반경 5백m까지 확대하여 실시키로 했다.

예방접종의 범위도 반경 10km까지 획일적으로 실시했지만 그동안 예방접종 가축의 혈청검사 결과 접종범위를 축소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반경 3km(위험지역)로 축소하되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위원회의 기술검토에 따라 10km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예방접종에 따른 농가의 사후관리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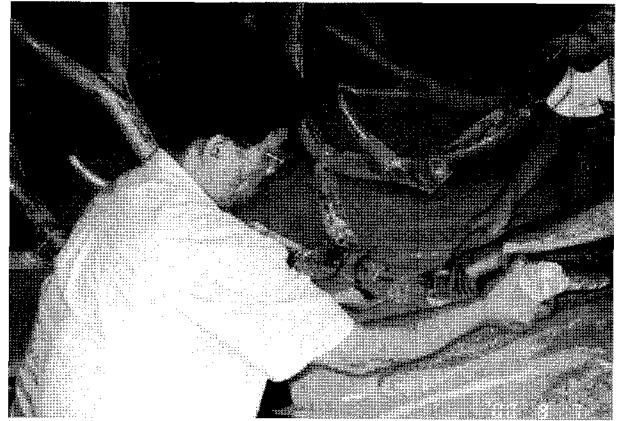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축사의 장소에서 발생시의 조치사항을 신설, 도축장·가축시장에서 발생할 경우 환축 출하농장은 발생농장과 동일한 조치를 받도록 했으며, 이 경우 도축장과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계류장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실시하도록 했다. *

**가축질병 근절없이
선진축산 미래없다**

공동구판위원회 생녹용 906kg 구매



△녹용수매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참관인들



△품질검사를 위해 절취부위에서 위로 30%부분을 절단한다.

본회 공동구판위원회(위원장 김은성)는 회원농가의 생산활동 지원과 녹용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녹용수매를 실시했다.

지난 8월 3일 충남 홍성지회를 시작으로 23일 경기 용인지회를 마지막으로 9개 지역에서 약 906kg의 녹용을 수매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한 녹용 수매는 등급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 했는데 최고(1등급) 1만원부터 최저(등외) 7천원까지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녹용수매가는 양당 8,030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수매는 녹용판로 확보가 어려운 농가들의 출혈판매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의 사료공급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대금 상계량에 대해 실시 했는데 부득이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희망할 경우도 포함됐다.

한편 올 수매 녹용 가운데 본회가 설



△녹용품질을 검사하는 김연명 구판위원

정한 품질등급에 따른 분포도를 보면 1등급이 4.37%, 2등급 20.63%, 3등급 48.66%, 등외 26.34%로 각각 나타났는데 이들 녹용은 모두 규격포장돼 행사를 통하거나 케이블 TV 등에 방송 판매될 계획이다.

올해에도 농가들의 녹용보관 및 관리 상태가 부실,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회가 제시한 녹용보관 방법의 철저한 준수가 요망된다. *